

신규 시립어린이집(3개소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-10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 .
제 출 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신축 및 재건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(가칭 : 시립초지어린이집, 시립중앙어린이집)과 가정어린이집 매입(가칭 : 시립호수어린이집)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위탁시설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보육 정원	보육 교직원	연면적	위탁기간	비고
(가칭) 시립초지	단원구 원초로 61(초지동)	30	6	201.24m ²	19.09.01.~ 24.08.31.	무상 임대
(가칭) 시립중앙	단원구 고잔로 115(중앙동)	45	10	363.42m ²	19.09.01.~ 24.08.31.	무상 임대
(가칭) 시립호수	단원구 광덕서로 19 대림아 파트 132동 101호(호수동)	20	5	116m ²	19.09.01.~ 24.08.31.	매입

○ 시설별 보육아동 규모

(2019. 3월 기준)

어린이집명	구분	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장애아
(가칭) 시립초지	반수	6	2	2	2				
	정원	30	6	10	14				
(가칭) 시립중앙	반수	7	2	2	2	1			
	정원	45	6	10	14	15			
(가칭) 시립호수	반수	4	1	2	1				
	정원	20	3	10	7				

- 위탁기간 : 5년 이내

※ 「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2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가능(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.)

□ 위탁대상 모집방법

- 모집방법 : 영유아보육법 제 24조에 2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위탁자 선정
- 신청자격 기준

【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】

- 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(정관의 목적 사업에 사회복지사업, 보육사업,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)으로 하는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※ 단, 법인(법인등기)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.

【개인】

-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①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
- ※ 신청자가 1명(1개 법인·단체)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

◆ 신청제외

- ▶ 「영유아보육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▶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된 운영체(자)
- ▶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▶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- ▶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(법인, 단체, 개인)
단, 모집대상 시설의 위탁이 시작되는 날 전일까지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
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자로 상기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가능
- ▶ 개인 신청자의 경우 1960년 이전 출생자
- ▶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(자)

□ 심사방법

○ 심사결정방법

- 적격성 확인 :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
- 선정방법 :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 시장이 결정
- 심사기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
보건복지부 2019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준용
(※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)

심사항목	항목별 점수
1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2.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	35
3.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	10
4. 운영체의 공신력	10
5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계	100

- 심사결정 :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·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
70점이상자 중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운영자로 선정
(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)

- 동점자 처리 :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 - 1순위 : 어린이집 운영계획
 - 2순위 :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
 - 3순위 :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
- 결과공개 : 안산시청 홈페이지 결과 공개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2조(위탁운영)

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·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함.
-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,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.

□ 예산 현황 : 민간위탁예산 없음

붙임 1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2.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신규 시립어린이집(3개소)
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.